#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은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852

발의연월일: 2020. 11. 27.

발 의 자: 강은미・류호정・민병덕

민형배 • 박대수 • 배진교

심상정 · 안호영 · 이동주

이용빈 · 이은주 · 장혜영

조오섭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학생·대학원생 등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민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, 중대 연구실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민간보험만으로는 충분히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.

실제로 2019.12.27. 경북대 실험실에서 대학원생 등이 화학 폐기물을 처리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었으나 그 피해를 보상하 기에 민간보험의 보장 수준이 충분하지 않아, 연구 도중 발생하는 사 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 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대학생·대학원생 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재

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폭넓게 연구활동종사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(제123조의2 신설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강은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851 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 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3조의2(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) ①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·연구기관등은 제6조에도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.

- ②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(이하 "연구활동종사자"라 한다)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.
- ③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업무 성격, 연구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.
- ④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- ⑥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·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연구활동종사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특례) 2019년 1월
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 제123
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23조의2(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투례) ①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·연구기관등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. ②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(이하 "연구활동종사자"라 한다)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. ③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업무 성격, 연구 경력 등을 고려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. ④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 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 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. ⑥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 험료의 산정・신고 및 납부 등 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